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 KB라이프

상품안내

① 가입안내

보험종류 :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노후소득인출기간(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기간(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보험가입조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가입나이	40세 ~ 75세	노후소득인출 개시나이	45세 - 84세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연금지급개시나이	85세
납입보험료 한도	3,000만원 이상		

※ 피보험자 1인당 최고 50억원까지 가입가능

② 보장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 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단, 최초 1회에 한함)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에 고도재해장해보장을 위한 계약자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액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하여 드리며,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의 0.1%/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노후소득인출 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노후소득인출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노후소득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으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0보다 작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0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사망적립액이 0이 된 이후부터는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을 더 이상 차감하지 않습니다.

노후소득인출기간

종류	설명	금액
노후소득 보증금액	노후소득인출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금액으로, 매 보험연도마다 노후소득인출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

※ 노후소득인출시 인출금액만큼 계약자적립액이 감소합니다. 단, 노후소득인출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단, 5년까지 보증지급)
노후소득 종신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 단,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

※ 계약 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연금적립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연금적립액으로 연금지급보증금액과 일시납보험료의 5% 중 큰 금액을 최저보증합니다. 계약체결시점에 연금지급보증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정하며, 노후소득인출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연금지급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의 1.25%/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상품특징

① 용어 설명

·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남/여 동일)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40세	3.50%	50세	3.90%	60세	4.30%	70세	4.70%
41세	3.54%	51세	3.94%	61세	4.34%	71세	4.74%
42세	3.58%	52세	3.98%	62세	4.38%	72세	4.78%
43세	3.62%	53세	4.02%	63세	4.42%	73세	4.82%
44세	3.66%	54세	4.06%	64세	4.46%	74세	4.86%
45세	3.70%	55세	4.10%	65세	4.50%	75세	4.90%
46세	3.74%	56세	4.14%	66세	4.54%		
47세	3.78%	57세	4.18%	67세	4.58%		
48세	3.82%	58세	4.22%	68세	4.62%		
49세	3.86%	59세	4.26%	69세	4.66%		

- **노후소득 인상률** : 연복리 4.5%
- **노후소득인출기간** :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노후소득인출개시** :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 적립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날(계약일 이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건강진단 등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승낙이 된 경우에는 승낙일부터 가능합니다.
-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 : 일시납보험료에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노후소득보증금액** :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 : 노후소득보증금액에서 해당 보험연도의 누적 노후소득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은 매년 연계약해당일마다 노후소득인출개시시 결정된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설정됩니다.
- **최저연금적립액** :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연금적립액보증금액과 일시납보험료의 5%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시점에 연금적립액보증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정하며, 노후소득인출 또는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적립액보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또

한, 연금적립액보증금액이 0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 보증 / 노후소득 보증비용** : 노후소득 보증이란 노후소득인출, 최저연금적립액의 보증(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증비용이란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노후소득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청약철회기간 중 상품계정으로 인해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청약시점과 청약철회기간의 마지막 날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을 비교하여 아래의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기간의 마지막 날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 모두 높아진 경우

- 둘 중 하나는 높아지고 나머지 하나는 동일한 경우

② 노후소득인출

· 계약자는 특별계정 투입일 이후 연금개시 전까지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후소득인출은 45세 이후 영업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매년 연계약해당일 전 2영업일 동안에는 노후소득인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원하는 금액을 연간 횟수 한도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차년도 이후 노후소득보증금액은 감소됩니다.

※ 노후소득인출시에는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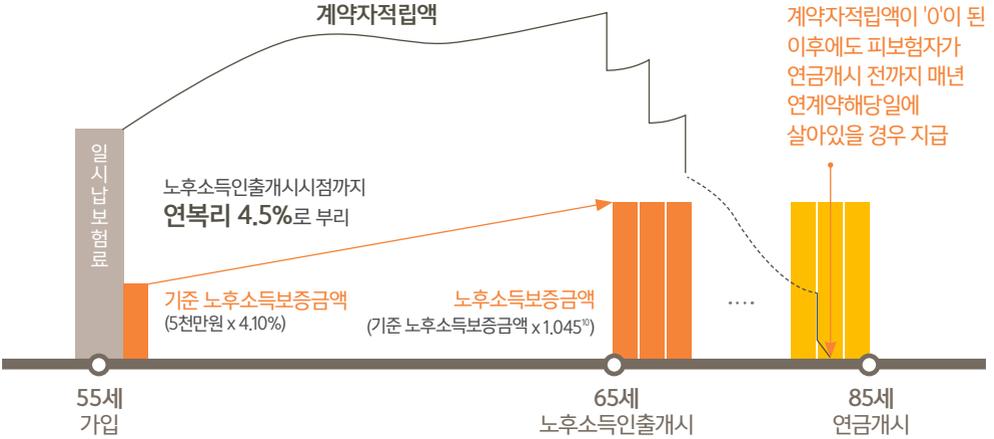
·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남아있고(노후소득보증금액을 전부 인출하지 않고 일부만 인출한 경우) 다음 보험연도가 도래한 경우, 다음 보험연도의 노후소득보증금액에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을 더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이월되지 않음)

· 노후소득인출시 노후소득인출금액만큼 계약자적립액이 감소합니다.

· 월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고 계약자적립액이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을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일시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연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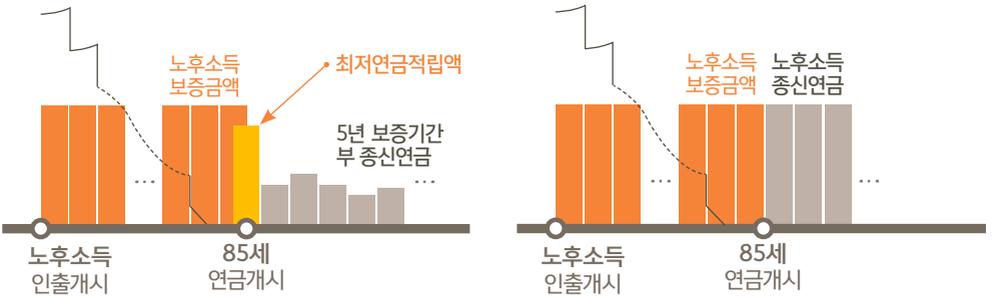
③ 가입예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예시기준 : 55세 여자, 일시납보험료 5천만원,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연금지급개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선택시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변경됩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선택시

※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④ 연금지급형태

이 보험의 연금지급개시일은 85세 연계약해당일입니다.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보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연금적립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연금적립액으로 연금적립액보증금액과 일시납보험료의 5% 중 큰 금액을 최저보증합니다. 계약체결시점에 연금적립액보증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정하며, 노후소득인출 및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연금적립액보증금액은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과 '인출금액'의 비율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적립액보증금액이 0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0로 합니다.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노후소득종신연금은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하여 계산합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시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해당 보험연도의 노후소득종신연금만큼 계약자적립액이 감소합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⑤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계산 예시

예시기준 : 55세,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남/여 동일)

1) 특별계정 투입일(계약일 이후 31일째 되는 날)에 노후소득인출개시시(1년을 365일로 가정시)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	지급률 4.10%	×	노후소득 인상률 (1.045) ^(31/365)	=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2,057,679원/년

2) 65세 연계약해당일에 노후소득인출개시시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	지급률 4.10%	×	노후소득 인상률 (1.045) ¹⁰	=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3,183,588원/년

3) 85세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예시는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증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증신연금으로 선택시 위 예시에서 노후소득증신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는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였으며,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란 노후소득인출기간 중 계약자가 직접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인출하는 대신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1, 3, 6, 12개월)에 따라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자동적으로 인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동지급금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급주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자동지급 금액	노후소득보증금액 ÷ 12	노후소득보증금액 ÷ 4	노후소득보증금액 ÷ 2	노후소득보증금액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차년도 이후 노후소득보증금액이 감소되며, 자동지급금액은 변경된 노후소득보증금액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계약자는 노후소득인출기간 동안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노후소득인출 개시시점부터 노후소득인출기간 종료일 이전 2영업일까지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연계약해당일 이전 2영업일 동안에는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를 신청, 변경 및 해지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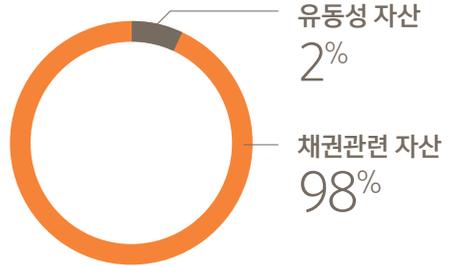
⑦ 펀드안내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계약 체결시 장기채권형 펀드를 100% 선택하셔야 합니다.

장기채권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473%**

운영보수	0.33%	투자일임보수	0.11%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



- ※ 기준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부과 :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의 “특별계정 운용보수/365를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채권관련 자산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유동성 자산 : CD, 기업어음, MMF, 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

⑧ 계약자적립액 인출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단,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선택한 경우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계약자적립액 인출 신청 당시 해약환급금(단, 고도재해장해보장을 위한 계약자적립액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노후소득인출기간 중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0이 된 이후에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 ※ 노후소득인출 개시후 매년 연계약해당일 이전 2영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노후소득보증금액, 최저연금적립액(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 및 노후소득종신연금(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은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과 ‘인출금액’의 비율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⑨ 계약자적립액 인출에 따른 노후소득 변경 예시

예시 기준 : 55세 여자, 일시납보험료 5천만원,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10년 후),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 2,0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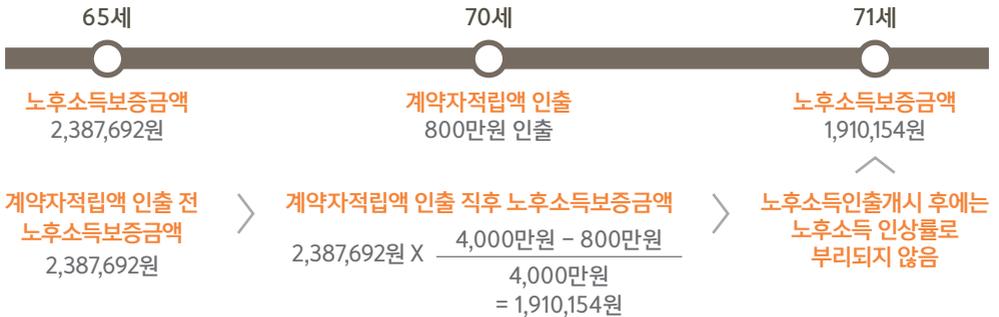
1) 노후소득인출 개시 전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57세 연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6,000만원 가정
같은 날 1,500만원 계약자적립액 인출 후,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시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보증금액은?



2) 노후소득인출기간 중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70세 연계약해당일에 1)에서 계산된 노후소득보증금액(2,387,692원)을 전액 인출
노후소득인출 후 남은 계약자적립액 4,000만원
같은 날 800만원 계약자적립액 인출 후, 71세 연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보증금액은?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선택시 연금지급기간 중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불가합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선택시 연금지급기간 중 계약자적립액 인출시에도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계산됩니다.

⑩ 해약환급금 예시

예시기준 : 여자 55세, 일시납보험료 5천만원,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연금지급개시, 노후소득보증
금액 : 3,183,588원/년, 장기채권형 펀드

단위 : 만원(천단위 이하 절사)

경과 기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노후소득 보증금액 누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 가정)					
				-1.00%가정 (순수익률:-2.35%)		2.25%가정 (순수익률:0.9%)		3.375%가정 (순수익률:2.025%)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4,865	0	5,000	4,640	92%	4,797	95%	4,851	97%
3년	4,716	0	5,000	4,332	86%	4,789	95%	4,954	99%
5년	4,567	0	5,000	4,040	80%	4,780	95%	5,059	101%
10년	4,442	0	5,000	3,473	69%	4,866	97%	5,451	109%
15년	2,749	1,591	3,408	1,508	30%	3,345	66%	4,219	84%
20년	1,096	3,183	1,816	0	0%	1,797	35%	2,901	58%
25년	0	4,775	224	0	0%	217	4%	1,484	29%
30년	0	6,367	0	0	0%	0	0%	0	0%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액 인출 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일시납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에서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노후소득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보증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단, 상기 특별계정투입금액 누계는, 노후소득보증금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직전 특별계정투입금액 누계에서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 노후소득보증금액 누계는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부터 매년 인출된 노후소득보증금액의 누계입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노후소득보증금액의 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0보다 작게 된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상기 예시에서 해약환급금은 65세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노후소득보증금액의 전액 인출을 가정한 예시이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해약공제금액 및 이미 지급된 노후소득보충금액과 노후소득종신연금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연금지급개시전 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 위 표의 경과년도 1년에 해당하는 예시는 55세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경과년도도 동일한 기준으로 합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⑪ 연금액 예시

예시기준 : 여자 55세, 일시납보험료 5천만원,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연금지급개시, 노후소득보충금 액: 3,183,588원/년, 장기채권형 펀드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단위 : 만원(천단위 이하 절사)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가정)	-1.00%가정(순수익률:-2.35%)			2.25%가정(순수익률:0.9%)			3.375%가정(순수익률:2.025%)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250			250			250		
예시이율(연복리)	최저보증	2.25%	2.50%	최저보증	2.25%	2.50%	최저보증	2.25%	2.50%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18	20	21	18	20	21	18	20	21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연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25%(단, 2022년 11월 현재의 공시이율 2.50%를 상한으로 함) 및 2022년 11월 현재의 공시이율 연복리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금액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시이율 변동시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이 보험의 연금지급기간 동안의 적립이율은 연단위 계약해당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1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계약후부터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0% 최저보증)로 하여 매 1년간 확정적용합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 : 3,183,588원/년

- ※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특별계정수익률,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및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1.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설명의무

- KB라이프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최저연금적립액,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5. 청약철회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센터(1588-3374/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kblife.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7. 3대 기본원칙 지키기(품질보증해지)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8.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 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0.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KB라이프생명 CS 센터나 사이버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565)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이 상품의 판매자격

- 이 상품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집 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2. 기준가격 및 순자산가치 확인

- 이 상품의 특별계정 기준가격과 순자산 가치는 KB라이프생명 홈페이지 변액보험공시실(www.kblife.co.kr)이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상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유의사항

- 이 보험상품은 변액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KB라이프생명보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KB라이프타워)

Tel. 02-2144-2000 Fax. 02-2144-2100 CS 센터. 1588-3374

수신자부담전화. 080-928-3838 준법감시인확인필-SM-2212005-1(2022.12.16~2023.12.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2-05133호 (2022.12.13 ~ 2023.12.12) 인쇄일자: 2023. 01. 01